

◇釜山市建築行政擔當官의 紙上對談 ◇



- 設 ① 본 협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
입니까?
② 일선 건축사에게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問 ③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
까?

◇...뜻과 길이 같은 동행자로서의 사명을...◇

建築課長 권 경욱

먼저 건축사 회지의 대담지면을 할애 해주신 협회
장님과 편집하시는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협회의 설립은 건축사의 품위 보전·업무의개선
·건축물의 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
적으로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영리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며, 이로 인해 관과 민, 너(시)
와 나(협회)란 상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
고 대하는 예가 일반적인 바, 이제는 보다 차원
을 높여서 이상적인 도시와 마을을 창조하는 뜻
과 길이 같은 행동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건
축의 발전적인 문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획 분야
와 새롭게 변화되는 지식을 전달시키는 매개역
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 '건축사, 하면 대서사 하고는 근본적으로 판이
함에도 이를 혼동하는 분이 일부 계시지 않나
합니다.

인간의 3가지 근본 요건 중의 하나인 주거문제
를 해결해 주고 동시에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창조 개발하는 건축예술이라고 일컫는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건축예술은 시각 후각, 감성의 관계에서
벗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실생활의 편의와·직
결되는 동적인 예술일진대 그 책임의 중대성은
사회적인 봉사의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공사감리에는 성의를 갖는 정도를 넘어서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 금년에 우리 부산시는 '종합 도시의 건설'을 시
정목표로 하고 그 중점 시책의 첫번째로 '세계로
나래칠 국제 도시의 건설'을 캐치 프래즈로 하
여 4,000 시 공무원이 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도시로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
시를 올해는 중후하고 우아한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건축물로 단장해 보겠다고 하나에



도 건설, 둘에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각
분야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지혜나 능력
이 욕심에 못미치니 건축사 제위의 절대적인 성
원이 정말 아쉽습니다.

개설사무소의 위치상 원근을 생각하지 말고,
격의 없는 지도와 충고로 좋은 창의와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건축사 제위의 사회
적인 품위가 향상될 수 있게 받침해 드리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행정담당 지방행정 사무관 서 일준

1. 설계도서 작성상 유의 사항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법을 위시한 관계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키고 작성함으로써 건축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 제한 저축, 지하실 면적의 부족, 민법 242조 내지 244조 규정한 제한 거리를 무시한 설계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착공계 미 제출코 준공 신고서 제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를 하였을 시는 건축법 제 7조에 의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치 않고 공사에 착수하고 그 후 준공 신고서만 제출하여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계몽 및 조치를 바랍니다.

3. 성실한 공사 감리

건축법 제 6조에 의거 15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이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철저한 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대부분 위반 시공되어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므로 인해 도리어 허가청을 원망하는 형편이 있으니 증명, 경계 침범 등 설계도서를 임의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 감리를 바랍니다.

4. 미완공 건물의 준공 신고

건축공사는 완공 이후 준공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미완공 상태에서 심지어 감리자 확인 마저 역역히 하여 준공 신고를 하는 예가 허다하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서류가 접수 반려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반복되고 있으니 본 건물은 물론 소방 시설 및 수세식 변소 시설 미완공에 이르기까지 완전 확인 후 준공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미완공 상태에서 권력층의 압력이나 기

타 부당한 힘을 빌려 검사를 받겠다는 건축주의 자세나 무책임한 신고가 없도록 하여 건축 행정에 보다 나은 발전이 있도록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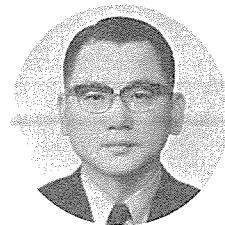
특수 건축 담당 안 증환

건축 행정의 많은 애로는 다 말할 수 없으나, 부산의 도시 용모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의 실무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건축사나 건축주에게도 직접적인 책임감도 있을 줄 압니다. 더우기 건축주는 건축법이나 건축 지식에 해박할 뿐 아니라, 때로는 건축사에게 건축 계획부터 공사 시공까지 일임하는 예도 많다고 봅니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당시간의 건축 허가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의 커다란 교량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산 도시 용모의 역사를 창조할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건축사는 무지한 건축주와 계획 당시부터 위반 건축에 동승하여 도시 발전에 암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법이나 민법 기타 관계법에 명시된 것을 충분히 설득 이해시켜서 건축사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에 후회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감리에 임할 때에도 역시 건축주의 입장에서 성실한 감리자가 되고 건축주를 지도 계몽하여 위법 건축물 또한 불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류를 처리할 충실한 공복 자세로서 봉사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부산 도시 용모의 역사를 창조하는 데 좋은 예술가적 건축사로서 교량 역할 자가 되도록 부탁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변영을 중심으로 빕니다.